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여성 및 여성단체(이하 "여성" 또는 "여성단체"라 한다)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기타 수입금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여성 및 여성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여성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 관련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 조성 및 기본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국장으로서, 기금출납원은 생활지도계장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계획) ①기금관리계획은 매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방법
2.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건전한 시민운동
3.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4. 여성의 사회교육사업
5.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6.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4조(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 운용 상황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금지원) 이 조례 제13조에 의한 기금의 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시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1998년부터 본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